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8. 30.

발의자 : 권칠승 · 신창현 · 이 훈
박 정 · 최인호 · 이찬열
김해영 · 박광온 · 김병기
이춘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또는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선명령, 판매 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,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기업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

이에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1항제1호 신설).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법률안

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·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4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4조(과태료) ①----- ----- -----. <u>1.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·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</u></p>
<p>2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</p>	<p>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